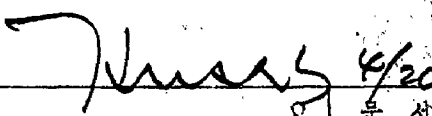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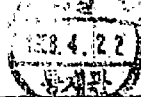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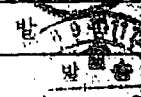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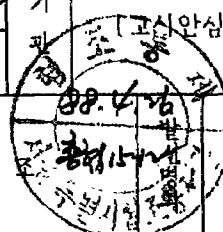


기안용지

(전화: 731-6391)

분류기호 문서번호	주개30321-51		시행상 특별취급
보존기간	영구·준영구. 10.5.3.1.	시 장	
수신처 보존기간	영 구		
시행일자	88. 4.		
보조 기 관	건설관리국장 전결	협 조 기 관 협조부계관 행정과장 법무담당관 (회차필) (고시안심사)	문서통계
	주택개발과장 <i>3/4</i>		
	개발2계장 <i>3/4</i>		
기안책임자	심관중(최종인)		
경유 수신 참조	각 안 참		시 장
제 목	주택개발제개발사업계획 변경결정및 고시 (역촌구역)		
(제 1 안) 내부결재			
1. 건설부고시 제55호 (81.2.20) 및 서울특별시고시 제511호 (87.7.			
16)로 구역지정및 구역변경 결정되고, 서울특별시고시 제674호(87.9.22)로 지			
적고시된 역촌 주택개발제개발구역에 대하여 도시재개발법 제5조(재개발사업계획의			
입안및 결정)및 같은법 제8조(권한의 위임)의 규정에 의거 별첨과 같이 사업계획			
변경결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6조 (재개발사업계획의 결정 또는 변경고시)의 규정			
에 따라 별첨 고시안과 같이 이를 고시하고자 합니다.			
첨부 : 1. 고시안 1부			
(제 2 안)			

수신 : 송부처장관

제목 : 관보게재의뢰

1. 우천시 역촌 주택개량재개발구역에 대하여 도시재개발법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사업계획을 변경결정하였기 같은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관보에 게재의뢰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첨부 : 1. 고시안 사본 2부

(제 3 안)

수신 : 건설부장관

참조 : 도시개발과장

제목 : 같은건 (보고)

1. 건설부고시 제55호 (81.2.20) 및 서울특별시고시 제511호(87.7.16)로 구역지정 및 구역변경 결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674호(87.9.22)로 지적 고시된 역촌 주택개량재개발구역에 대하여

2. 도시재개발법 제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, 제56조 및 제58조의 규정에 의거 사업계획변경결정 고시하였기 같은법시행령 제58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그 처리내용을 보고합니다.

첨부 : 1. 고시안 사본 1부

5411

2. 사업계획변경결정 도서 1부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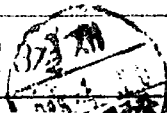
(제 4 안)	
수신 : 은평구청장	
참조 : 주택과장	
제목 : 같은건 (통보)	
1. 건설부고시 제55호 (81.2.20) 및 서울특별시고시 제511호(87.7.16)로 구역지정 및 구역변경 결정되고, 서울특별시고시 제674호(87.9.22)문 제 적고시된 역촌 주택개방재개발구역에 대하여 별첨과 같이 사업계획변경결정하였기	
통보하오니 관계도서를 도시계획 관련 해당과에 통보하여 민원이 발생치 않도록 업무처리에 각별 유의할 것.	
첨부 : 1. 고시안 사본 2부	
2. 사업계획변경결정 도서2부	
(제 5 안) 3/4	
수신 : 수신처참조	발신 : 과장
제목 : 같은건 (통보)	
1. 건설부고시 제55호 (81.2.20) 및 서울특별시고시 제511호(87.7.16)로 구역지정 및 구역변경결정되고, 서울특별시고시 제674호(87.9.22)문 제 적고시된 역촌 주택개방재개발구역에 대하여 별첨과 같이 사업계획 변경결정하였기	
통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	

첨부 : 1. 고시안 사본 1부

2. 사업계획 변경결정도서 1부. 끝.

수신처 : 도시계획과장, 시설계획과장

541372



건설부

도시안 88.4.99
30/10/99

고 시 안
서울특별시고시 제 호

역촌 주택개량재개발구역 사업계획 변경결정

1. 건설부고시 제55호 (81.2.20) 및 서울특별시고시 제511호(87.7.16)로 구역지정 및 구역변경 결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674호 (87.9.22)로 지적고시 및 같은고시 제262호(81.7.10)로 사업계획결정된 역촌 주택개량재개발구역에 대하여, 도시재개발법 제5조 및 제8조, 같은법 시행령 제56조의 규정에 의거 사업계획을 변경결정하였기 같은법 시행령 제58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.
2.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청 주택개량과와 은평구청 주택과 및 도시정비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.

1988. 4.

서울특별시장

- 가. 재개발사업의 명칭 : 역촌 주택개량재개발사업
- 나. 구 역 명 : 역촌 주택개량재개발구역
- 다. 변 적 : 37,464m²
- 라. 공공시설의 위치와 규모 : 변동없음

1999. 12. 27. 1999. 12. 27.

마. 건축계획

구 분	변경전	변 경 후
건축시설 주용도	미 정 (방범 적용)	주택및 근린생활시설
건폐율	"	단독주택, 다세대주택, 복합용도(주택및 근린생활 시설) 건축물 : 50 % 이하 연립주택 : 40 %
용적율	"	단독주택, 다세대주택, 복합용도 건축물 : 150% 연립주택 : 120%
높 이	"	건축법및 관계규정 적용

바. 변경사유 : 서울특별시고시 제511호 (87.7.16)구역변경결정
(일부추가)에 따른 토지이용계획의 변경과 당초
미결정된 건축계획의 결정

1848
기물관리국장

사업계획 변경결정 조서

1. 구역명 : 역촌구역

가. 계획변적

위 치	면 적 (m ²)		비 고
	변경전	변경후	
은평구 역촌동 산32-4일대	36,364	37,464	일부추가

나. 토지 이용계획

단위 : m²

구분 \ 용도	변경전	변경후	증 감
계	36,364	37,464	(증) 1,100
택 지	32,910	33,093	(증) 183
도 토	2,780	3,627	(증) 847
녹 지	674	744	(증) 70

다. 공공시설 정비계획 : 변동없음

1988
기술원리작성

타. 건축물 정비계획

구 분	변경전	변 경 후
건축시설 주용도	미 정 (방침 적용)	주택및 근린생활시설
건폐율	"	단독주택, 다세대주택, 복합용도(주택및 근린생활 시설)건축물 : 50%이하 연립주택 : 40%
용적율	"	단독주택, 다세대주택, 복합용도 건축물 : 150% 연립주택 : 120%
높 이	"	건축법및 관계규정 적용

역촌區域



호선 2동

호선 3동

110

355

37

1597

155

110

10

10

10

172